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. 3. 23 선고 2021가단3010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23.

주 문

1. [별지 2]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9. 7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. 7. 15. 접수 제35174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[별지 1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하석찬

별지